

2026

소방공무원법

소방승진소방법령 1, 4

엠북 소방법규

공부혁명!
mbook.kr

- ✦ 스마트폰 수험총서
- ✦ 법, 시행령, 시행규칙 종합
- ✦ 최근 법령 신설, 개정 내용 반영
- ✦ 2시간 4분 완성

도서명 : 소방공무원법

ISBN : 979-11-7393-237-3

발간일 : 2026-04-27

형식 : 스마트폰용 전자책(PDF)

저자 : 엠북

출판사 : 엠북

홈페이지 : <https://www.mbook.kr/>

이메일 : by4782@gmail.com

정가 : 16,000원



소방공무원법

(이하 법)

[목차]

제1장 총칙(p6)

제2장 임용(p11)

제3장 승진(p82)

제4장 교육훈련(p121)

제5장 복제(p161)

제6장 복무(p175)

제7장 징계(p184)

제8장 보칙·벌칙(p223~234)

[관련 법령]

(대통령령)

소방공무원 임용령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소방공무원 징계령

공무원고충처리규정

(행정안전부령)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용어/약어]

부령은 행정안전부령

청장은 소방청장

시도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도지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실시권자는 시험실시권자(시험실시기관이나

시험실시권 위임 받은 자)

공채는 공개경쟁채용

경채는 경력경쟁채용

소방공채는 소방공무원 공채

간부시험은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심의위는 채용비위심의위원회

[비고]

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

노란색 형광펜은 암기코드 등

검은색은 법

파란색은 대통령령

갈색은 부령

초록색은 최근(1~2년내) 개정된 내용

붉은색은 시행 예정

(Copyright) 공부혁명 엠북(mbook.kr)

제1장 총칙

1. 목적(1조)

- 소방공무원의 책임과 직무의 중요성,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해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 규정

2. 정의(2조)

가. 임용 신승전파/ 강휴직정/ 강복면해파

- 신규채용, 승진, 전보, 파견
-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 강등, 복직, 면직, 해임, 파면

나. 전보

- 같은 계급과 자격 내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

다. 강임

- 동종 직무 내 하위 직위에 임명

라. 복직

- 휴직/직위해제,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 포함) 중인 소방공무원을 직위에 복귀

3. 계급 구분(3조) 총정감준/ 정령경위/

장교사

- 소방총감,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준감
-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4. 누구든 소방공무원 **시험/임용**에 관해
고의로 **방해**, 부당한 영향 **금지**(8조)

5. **시험실시기관**(11조)

가.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과 승진시험,
간부시험은 청장이 실시

나. 청장이 인정시 소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나 소방청 소속기관
장에 위임

1) 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시도 소방경 이하
신규채용 시험 실시권 위임 가능

2) 시도지사는 청장에게 시도 소방경 이하

신규채용시험 문제출제 의뢰 가능

- 출제 비용 부담 등은 서로 협의

6. 임용시험의 응시 자격 및 방법(12조)

- 신규채용시험, 승진시험, 간부시험 응시 자격, 시험방법 등은 대통령령(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정함

7. 임용후보자명부(13조)

가) 시험실시기관 장은

- 임용권자에 시험 합격자 명단 보내야 함

나) 임용권자는

- 신규채용시험 합격자(간부시험에 합격해

교육훈련 마친 자 포함)과 승진시험 합격자를,

- 성적순으로 각각 신규채용후보자명부나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

다) 유효기간 2년

- 임용권자는 1년내 연장

(Copyright) 공부혁명 엠북(mbook.kr)

제2장 임용

법(6~13조) 및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1절 총론

1. 정의

가. 소방기관

- 소방청, 시도,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
지방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소방체험관

나. 필수보직기간

- 소방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해야 하는 최소기간

2. 임용권자

가. 대통령

- 청장 제청으로 총리 거쳐 소방령 이상 임용

- 소방총감 임명

나. 청장

- 소방경 이하 임용

- 소방령 이상 소방준감 이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복직

3. 임용권 일부 위임

가. 대통령

- 청장에 소방청과 소속기관 소방정/소방령,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

- 시도지사에 시도 소속 소방령 이상(단, 소방본부장, 지방소방학교장 제외) 임용권

위임

나. 청장

- 시도지사, 소방청 소속기관장에 위임

1) 중앙소방학교장에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장에 중앙119구조본부의
소방령 전보,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권한과 소방경 이하 임용권 위임

- 중앙119구조본부장은 119특수구조대 소방경
이하에 대한 119특수구조대내 전보권을
119특수구조대장에 재 위임

2) 시도지사에 다음 위임

- 시도 소방령 이상 소방준감 이하(단, 소방본부장, 지방소방학교장 제외)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복직
-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에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 시도 소방경 이하 임용권

다. 시도지사

- 소속기관 장에 위임받은 임용권 일부 재위임
- 지방소방학교장, 서울종합방재센터장, 소방서장, 119특수대응단장, 소방체험관장에
- 관할구역안 지방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소방체험관 소속

소방경 이하(서울소방학교, 경기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는 소방령 이하)에 대한 해당 기관내 전보권과 소방위 이하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권한 위임

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을 승진시키려면 미리 청장에 보고

마. 청장은 정원 조정, 소방기관 간 인사교류 등 인사행정 운영상 필요시 임용권 직접 행사

4. 인사기록

- 임용권자(임용권 위임받은 자 포함)은

대통령령(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 인사기록
작성/보관

제2절 소방공무원인사위 (이하 인사위)

1. 설치

- 소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청장 자문을 위해 소방청에 둔다
- 단, 시도지사가 임용권 행사시 시도에 둔다

2. 구성

- 가) 위원장 포함 5~7명
- 나) 위원장

- 소방청 인사위는 소방청 차장

- 시도 인사위는 소방본부장

다) 위원은 인사위가 설치된 기관 장이 소속
소방정 이상 중 임명

3. 운영

가) 위원장의 직무

- 사무 총괄, 인사위 대표

- 위원중 최상위 직위 또는 선임 공무원이
대행

나) 회의

-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됨

- 재적 2/3 이상 출석, 출석 과반 찬성 의결

다) 간사

- 약간인 됨

- 인사위가 설치된 기관 장이 소속공무원 중 임명

- 위원장 명 받아 사무 처리

라) 심의사항의 보고

- 위원장은 지체없이 인사위가 설치된 기관장에 보고

마) 운영세칙

- 인사위 의결 거쳐 위원장이 정함

4. 기능(심의사항)

- 인사행정 방침, 기준, 기본계획
- 인사 법령 제정/개정, 폐지
- 청장/시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절 신규채용

1. 개요

가. 원칙: 공개경쟁시험

- 단, 소방위는 소방간부후보생(대통령령상 자격 갖추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선발된 자)로서 교육훈련 마친 자 중 신규채용